

- 범죄의 성립 요건 (모두 충족해야 유죄라고 할 수 있음)

1) 구성 요건 해당성 - 법에서 말하는 행위에 부합하는가

2) 위법성 - 법에 해당하는 바로 그 행위가 위법했는가 by 객관적인 법질서 전체 (사회 상규)

3) 유책성 - 행위자의 행위에 대한 비난 가능성 (∞ 기대 가능성)

1)을 충족하면 거의 모든 경우에서 2)를 충족. 법 안에 이미 위법성에 관한 내용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그 예외인 1)을 충족했음에도 불구하고 2)를 충족하지 않은 경우는 위법이 아니다.

1)의 내용이 법에서 말하는 객관적인 법질서 전체에도 부합하는 내용이라면 위법성을 충족하지 않는다. ex) 긴급 피난

위법성 조각 사유 - 원래는 위법성을 충족해야 할 1)임에도 불구하고 위법성을 없애주는 것 대표적으로 긴급 피난과 정당 방위가 있음.

긴급피난: 위난을 피하기 위한 어쩔 수 없는 행위

정당방위: 급박하고 부당한 침해를 막기 위하여 침해자에게 어쩔 수 없이 취하는 행위

- 정당방위 성립 요건

1) 정당방위 상황 - 객관적 정당화 요소의 충족 (엄연한 침해 상황이어야 한다)

2) 방위를 하는 행위자가 방위 행위를 실현한다는 의사가 있음 (목적이 방위여야 함)

- 주관적 정당화 요소의 충족

3) 상당성 - 방위의 필요성(오로지 방위 목적)과 요구성(사회 전체 풍조)을 고려한 사회 상규

1), 2)를 충족하고 3)만 충족하지 않은 것은 과잉 방위라고 한다. 과잉 방위의 경우 정당방위가 아니기에 위법성 조각 사유가 아니다. 따라서 범죄가 성립한다.

과잉 방위임에도 범죄가 성립하지 않으려면 범죄 성립 요건 중 3) 유책성이 위반되어야 한다. 그 예로는 밤중 상황, 공포 경악 흥분 등으로 인한 패닉 상태 등이 있다.

이번에는 1) 정당방위 상황만 충족하지 않은 경우, 정당방위 상황으로 오해하는 것을 '오상 방위'라고 한다. 이 경우 정당방위가 아니어서 죄가 성립하지만, 범죄의 의도가 없었기에 과실임이 인정되어 참작된다. 이 또한 3)유책성이 충족되지 않을 경우 죄가 성립하지 않을 수 있다.

정당방위 성립 요건을 이해함으로써 1) 정당방위 상황이 충족되는 상황에서, 자신이 입을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다. (침해자로부터 입을 피해를 방위로 줄이거나 / 잘못된 방위로 인해 위법할 가능성을 줄이거나)